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2-23

인 천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구합55952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 고	A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 고	○○도 ○○시장
변 론 종 결	2023. 6. 9.
판 결 선 고	2023. 8.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 1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경정결과'란 기재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가산세의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2-23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4. 22. ○○시 ○○구 B ○○ 38,322,5㎡에서 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나. ○○시장은 2018. 11. 7.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는 처분을 하고 2018. 11. 12. 이를 고시하였으며 2019. 11. 5. 이 사건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처분을 하고 2019. 11. 11. 이를 고시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2020. 5. 15.부터 2020. 10. 22.까지 별지1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다음 2020. 11. 12.부터 2020. 11. 27.까지 그에 관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가산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를 신고 또는 수정신고하고 2020. 11. 12.부터 2020. 12. 11.까지 이를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21. 1. 13.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 등이 75% 감경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에 대한 감액경정을 각 청구하였다.

마. 피고는 2021. 1. 15. 원고의 위 각 경정청구를 모두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4.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6. 2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2-23

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의 쟁점

가. 취득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은 과세물건을 취득한 때(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1호)이지만,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제16865호, 2020. 1. 15.) 제5조 제2항은 '제74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서 2020년 1월 1일 이후 도시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는 사업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일이 2020. 5. 15.부터 2020. 10. 22.까지임에도 불구하고 2018. 11. 7.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시행계획을 인가받은 원고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법률 제16865호)이 아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된다.

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3항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같은 법 제2조 제2호 나목 중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고 정하고 있는데(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이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재개발사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이하에서는 이에 관하여 본다.

4. 판단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2-23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그 법문과 다른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8다287287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두13537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업은 이 사건 조항에서 규정된 재개발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도시정비법이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도시정비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구분되었다(제2조 제2호 참조). 이때, 도시환경정비사업이란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하고, 주택재개발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후 도시정비법이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면서 도시정비사업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으로 구분하였는데, 이는 복잡한 정비사업 유형을 통합하여 단순화하고, 일반 국민들이 정비사업 제도를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위와 같은 법률은 2018. 2. 9.부터 시행되었다. 이때 재개발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2-23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종전의 도시환경정비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을 포함하는 것이다.

②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제74조 제3항에서 취득세를 감경하는 도시정비사업의 유형을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규정하였다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면서 그 유형을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변경하였고, 위와 같은 규정 역시 2018. 2. 9.부터 시행되었다. 이후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면서 제74조 제3항에서 취득세를 감경하는 도시정비사업의 유형을 재개발사업(같은 법 제2조 제2호 나목 중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과 주거환경개선사업(같은 법 제2조 제2호 가목 중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규정하였고, 위와 같은 규정은 2019. 1. 1.부터 시행되었다. 결국 문언상 종전의 주택재개발사업만이 취득세를 감경하는 유형에 포함되게 되었고, 종전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취득세의 감경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③ 이 사건 사업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라목에서 정의하였던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해당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이 사건 사업은 2017. 10. 16. 최초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이 고시되었다가 2018. 10. 29. 도시정비법이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됨에 따라 재개발사업으로 정비계획 변경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이 고시되었다), 도시정비법은 재개발사업을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2-23

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으로 정의하고, 이 사건 조항은 '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 중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을 하는 경우', 즉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나목에서 정의하였던 주택재개발사업에 한정하여 취득세 등의 감경대상을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취득세 등의 감경대상 재개발사업에는 종전 도시환경정비사업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④ 원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연혁 및 입법취지, 입법자의 의도, 도시환경정비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이 그 목적과 사업의 진행과정상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조항을 합목적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조세평등주의에 근거하여 이 사건 사업도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취득세 등의 감경대상인 재개발사업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법규의 해석상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할 수 있으나 그 문언상 의미가 명확하다면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이라는 명목으로 요건을 창출하여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입법형성을 하는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그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법 해석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 점(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8다287287 판결 등 참조),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과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2-23

은 명확히 구별되고 이를 달리 취급할 사유도 있어 보이는 점, 이 사건 조항이 취득세 등의 감경대상을 주택재개발사업에 한정함이 그 문언상 명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어 종전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포함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를 경감하는 규정을 두었다는 사정은 위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2-23

별지1

연번	결제번호	결제일자	취득일	신고일	적발호수	부과유형명	관세과목세	관세과목가산세	관세농특세	관세교육세	관세교육가산세	관세세액합	
		총 74건					1,548,993,000	21,102,580	77,433,540	464,140	154,869,110	856,400	1,803,790,670
1			2020-10-22	2020-11-27	1,609,500	수동 신고분	45,260	860	2,410	20	4,520	40	56,470
2			2020-05-15	2020-11-27	20,569,360	수동 신고분	616,760	58,890	30,838	1,430	61,670	2,600	772,370
3			2020-05-15	2020-11-27	17,056,500	수동 신고분	511,700	48,860	25,560	1,160	51,170	2,330	640,760
4			2020-05-15	2020-11-27	20,569,360	수동 신고분	616,760	58,890	30,838	1,400	61,670	2,800	772,360
5			2020-05-15	2020-11-27	16,987,810	수동 신고분	509,640	48,660	25,480	1,150	50,960	2,310	638,200
6			2020-07-15	2020-11-27	130,659,600	수동 신고분	979,950	79,610	-	-	97,990	3,000	1,160,510
7			2020-07-15	2020-11-27	114,500,957	수동 신고분	3,435,030	265,410	171,750	6,160	343,500	12,360	4,294,210
8			2020-07-15	2020-11-27	16,979,170	수동 신고분	509,370	43,790	25,460	910	50,900	1,820	632,250
9			2020-07-15	2020-11-27	121,765,463	수동 신고분	913,260	76,930	-	-	91,320	3,120	1,084,630
10			2020-07-15	2020-11-27	20,569,310	수동 신고분	616,470	51,930	30,820	1,050	61,640	2,110	764,020
11			2020-07-22	2020-11-27	16,979,170	수동 신고분	509,370	42,900	25,460	870	50,930	1,740	631,270
12			2020-07-10	2020-11-27	40,333,232	수동 신고분	302,250	23,640	-	-	30,220	850	356,960
13			2020-07-20	2020-11-27	26,858,821	수동 신고분	201,210	15,740	-	-	20,120	550	237,620
14			2020-07-20	2020-11-27	16,121,250	수동 신고분	120,910	9,450	-	-	12,080	340	142,780
15			2020-07-20	2020-11-27	26,858,821	수동 신고분	201,510	15,760	-	-	20,150	560	237,980
16			2020-07-20	2020-11-27	26,858,821	수동 신고분	201,510	15,760	-	-	20,150	560	237,980
17			2020-07-20	2020-11-27	26,858,821	수동 신고분	201,510	15,760	-	-	20,150	550	237,970
18			2020-08-25	2020-11-27	468,832,160	수동 신고분	14,064,960	639,950	703,240	14,410	1,406,490	28,630	16,857,880
19			2020-08-25	2020-11-27	1,410,914,730	수동 신고분	42,327,440	1,925,890	2,116,370	43,350	4,232,740	86,770	50,732,560
20			2020-08-20	2020-11-27	16,979,171	수동 신고분	509,370	24,950	25,460	810	50,930	1,220	612,540
21			2020-08-20	2020-11-27	10,717,966	수동 신고분	80,360	3,020	-	-	8,030	180	92,520
22			2020-08-20	2020-11-27	16,191,960	수동 신고분	545,760	26,730	27,290	850	54,570	1,300	656,500
23			2020-10-22	2020-11-27	181,676,471	수동 신고분	1,358,070	25,120	-	-	135,800	1,150	1,520,140
24			2020-10-22	2020-11-27	145,985,951	수동 신고분	1,094,140	20,240	-	-	109,410	920	1,224,710
25			2020-10-22	2020-11-27	140,074,538	수동 신고분	1,050,550	19,420	-	-	105,050	950	1,175,920
26			2020-10-22	2020-11-27	5,340,858,840	수동 신고분	160,225,770	2,964,160	8,011,280	69,090	16,022,570	135,190	187,428,060
27			2020-10-22	2020-11-27	7,666,105,150	수동 신고분	230,583,150	4,265,780	11,520,150	97,920	23,058,310	195,660	269,730,370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2-23

28			2020-10-22	2020-11-27	153,638,204	수정 신고분	1,227,260	22,700	-	-	122,720	1,040	1,373,750
29			2020-10-22	2020-11-27	1,596,888,217	수정 신고분	47,668,650	886,130	2,384,960	20,350	4,769,960	40,710	56,831,810
30			2020-10-22	2020-11-27	6,453,275,898	수정 신고분	193,598,260	3,587,110	9,694,910	82,400	19,359,820	164,810	226,817,330
31			2020-10-22	2020-11-27	838,173,313	수정 신고분	14,504,430	266,320	188,630	1,430	1,450,440	12,320	16,425,570
32			2020-10-22	2020-11-27	732,754,848	수정 신고분	8,927,420	164,780	445,270	3,780	892,740	7,570	10,439,560
33			2020-10-22	2020-11-27	20,648,741	수정 신고분	619,460	11,450	-	-	61,940	520	693,400
34			2020-10-22	2020-11-27	238,478,666	수정 신고분	1,788,560	33,050	-	-	178,850	1,520	2,002,040
35			2020-10-22	2020-11-27	845,878,452	수정 신고분	16,939,080	312,370	846,950	7,190	1,693,900	14,380	18,814,880
36			2020-10-22	2020-11-27	861,165,130	수정 신고분	17,656,940	504,350	884,840	7,520	1,766,690	15,040	20,835,380
37			2020-10-22	2020-11-27	263,764,509	수정 신고분	2,123,290	39,260	-	-	212,325	1,800	2,376,210
38			2020-10-22	2020-11-27	1,559,304,122	수정 신고분	46,779,120	865,410	2,339,560	19,865	4,677,910	39,760	54,721,000
39			2020-10-22	2020-11-27	341,065,503	수정 신고분	2,557,090	47,310	-	-	255,700	2,170	2,862,260
40			2020-10-22	2020-11-27	216,858,312	수정 신고분	1,641,740	30,360	-	-	164,170	1,390	1,837,660
41			2020-10-22	2020-11-27	215,564,714	수정 신고분	1,618,660	29,900	-	-	161,860	1,370	1,809,790
42			2020-10-22	2020-11-27	2,855,765,598	수정 신고분	66,672,870	1,607,140	4,340,640	36,920	8,667,280	73,540	101,421,190
43			2020-10-22	2020-11-27	397,972,221	수정 신고분	5,271,200	97,520	309,410	2,620	527,120	4,460	6,202,320
44			2020-10-22	2020-11-27	397,972,209	수정 신고분	5,271,260	97,520	309,410	2,620	527,120	4,460	6,202,330
45			2020-10-22	2020-11-27	943,998,103	수정 신고분	10,319,260	190,900	515,960	4,360	1,031,920	8,710	12,071,210
46			2020-10-23	2020-11-27	436,356,077	수정 신고분	3,292,170	60,920	164,600	1,390	329,210	2,790	3,851,080
47			2020-10-22	2020-11-27	434,874,490	수정 신고분	3,260,080	60,310	163,000	1,380	326,000	2,770	3,813,530
48			2020-10-22	2020-11-27	2,297,187,332	수정 신고분	68,915,600	1,274,990	3,445,780	29,260	6,891,560	58,570	80,615,740
49			2020-10-22	2020-11-27	17,051,854	수정 신고분	511,550	9,460	25,580	210	51,150	430	598,730
50			2020-10-23	2020-11-27	5,972,583	수정 신고분	179,180	3,310	8,950	70	17,910	150	209,570
51			2020-10-22	2020-11-27	671,221,237	수정 신고분	7,456,110	137,200	413,100	3,510	745,610	6,340	8,762,600
52			2020-10-23	2020-11-26	5,972,553	일반(ocr)신고구분	179,180	-	8,950	-	17,910	-	206,050
53			2020-10-14	2020-11-16	224,562,406	일반(ocr)신고구분	4,202,530	-	336,650	-	420,250	-	5,059,430
54			2020-10-14	2020-11-16	144,007,067	일반(ocr)신고구분	2,700,710	-	216,020	-	270,070	-	3,251,400
55			2020-10-14	2020-11-16	144,007,067	일반(ocr)신고구분	2,700,710	-	216,020	-	270,070	-	3,251,400
56			2020-10-14	2020-11-16	144,007,067	일반(ocr)신고구분	2,700,710	-	216,000	-	270,070	-	3,251,400
57			2020-10-14	2020-11-16	144,007,067	일반(ocr)신고구분	2,700,710	-	216,000	-	270,070	-	3,251,400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2-23

58			2020-10-14	2020-11-14	240,780,776	일반(acr)신고구분	4,377,100	-	261,100	-	437,710	-	5,176,100
59			2020-10-14	2020-11-13	256,417,109	일반(acr)신고구분	1,925,130	-	-	-	192,360	-	2,115,649
60			2020-10-14	2020-11-13	122,950,791	일반(acr)신고구분	1,372,100	-	-	-	137,220	-	1,509,320
61			2020-10-14	2020-11-13	144,007,007	일반(acr)신고구분	2,755,710	-	316,030	-	276,670	-	3,281,400
62			2020-10-14	2020-11-13	756,345,663	일반(acr)신고구분	12,493,600	-	1,134,520	-	1,249,300	-	14,644,540
63			2020-10-14	2020-11-12	203,330,594	일반(acr)신고구분	1,524,260	-	-	-	152,500	-	1,677,480
64			2020-10-14	2020-11-12	13,819,839	일반(acr)신고구분	417,600	-	20,880	-	41,760	-	480,240
65			2020-10-14	2020-11-12	16,615,953	일반(acr)신고구분	504,460	-	25,230	-	50,450	-	580,140
66			2020-10-14	2020-11-12	520,873,477	일반(acr)신고구분	16,799,370	-	804,160	-	1,679,100	-	19,274,260
67			2020-10-14	2020-11-12	1,213,141,119	일반(acr)신고구분	35,406,230	-	1,830,310	-	3,540,600	-	41,957,100
68			2020-10-14	2020-11-12	7,788,411,902	일반(acr)신고구분	83,652,300	-	4,182,620	-	8,365,230	-	96,200,210
69			2020-10-14	2020-11-12	6,087,341,644	일반(acr)신고구분	172,616,100	-	9,161,910	-	17,201,640	-	198,349,620
70			2020-10-14	2020-11-12	6,642,442,665	일반(acr)신고구분	181,273,200	-	9,063,660	-	18,127,320	-	208,464,270
71			2020-10-14	2020-11-12	29,443,741	일반(acr)신고구분	619,460	-	30,970	-	61,950	-	712,380
72			2020-10-14	2020-11-12	205,826,858	일반(acr)신고구분	1,543,550	-	-	-	154,350	-	1,697,900
73			2020-10-14	2020-11-12	123,119,610	일반(acr)신고구분	3,693,280	-	184,660	-	369,300	-	4,247,630
74			2020-10-20	2020-11-12	5,972,562	일반(acr)신고구분	-	-	-	-	-	-	-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2-23

별지2

관계 법령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2. “정비사업”이라 함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가로구역: 정비구역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을 말하며, 바목의 사업으로 한정한다)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목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을 포함한다.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나. 주택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다. 주택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라. 도시환경정비사업 :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마. 주거환경관리사업: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바. 가로주택정비사업: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정의)

2.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나.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2-23

개선하기 위한 사업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7. 12. 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제4호 및 제5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같은 법 제2조제2호나목 중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주거환경개선사업(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 중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제4호 및 제5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제16041호, 2018. 12.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3. 3. 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⑤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제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2-23

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 및 제3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여 취득세를 경감받은 사람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제16865호, 2020. 1. 15.)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② 제74조제4항제1호 및 제3호와 제5항의 개정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서 2020년 1월 1일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17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및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 중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20년 1월 1일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의 시행에 따라 202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및 추징에 대해서는 제74조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74조제3항에 따른다.

끝.